

고 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-36호

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

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5-62호(2015.5.21)호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6-93호(2016.9.29)호에 의거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규정에 의거 방배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2. 21.

서 초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방배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92-1번지 외 49필지
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17,877.50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방배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손달익)
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40(방배3동 985-6)202호
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19. 2. 19.
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
 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 - 1) 대지면적 : 17,877.50㎡
 - 2) 지하4층/지상15층, 아파트 5개동(353세대), 부대·복리시설
 -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대상	주택 규모별 공급세대수			
	계	60㎡ 이하	60㎡ 초과 ~ 85㎡ 이하	85㎡ 초과
계	353	133	178	42
토지등소유자	216	67	115	34
일반분양	96	25	63	8
소형주택(임대)	41	41	-	-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

1) 신 설 : 도로-1,318.60㎡, 공원-1,471.80㎡

2) 폐 지 : 1,437.3㎡

라.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철거완료

6. 주요변경내용 : 준공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확정계획에 따른 확산면적 감소 2.3㎡

※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02-2155-7349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압니다.